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진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1.

발 의 자 : 주진우 · 김승수 · 엄태영
우재준 · 나경원 · 김은혜
조지연 · 신동욱 · 서범수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·인쇄·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투표용지·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·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.

투표용지, 투표함, 투표용지 발급기, 투표지분류기 및 봉인지 등은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·정확성 및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, 그 생산·제조 과정과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.

특히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실제 생산은 국외 업체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조달할 경우, 생산·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·감독과 품질 및 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투표용지·투표함·기표대·투표용지 발급기·투표지분류기·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·제조하도록 하고, 생산·제조 및 주요 가공·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.

또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의 소재지, 제조공정, 원재료·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·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,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·해지, 계약대금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51조의2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1조의2(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) ① 다음 각 호의 선거관리 핵심물품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·제조하여야 한다.

1. 투표용지 및 사전투표용지
2. 투표함·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
3. 기표대 및 기표용구
4. 투표용지 발급기 및 그 전용용지
5. 투표지분류기 및 계수기
6. 봉인지 및 특수봉인지
7. 그 밖에 투표·개표의 공정성 및 보안과 직접 관련된 물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물품

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관한 제조·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·제조 및 주요 가공·조립 공정을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·제조 및 주요 가공·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 또

는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계약상대자는 생산시설의 소재지, 제조공정, 원재료·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·하도급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이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·제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다.

⑥ 계약상대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, 지급한 계약대금을 환수하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⑦ 국내 생산·제조 및 주요 공정의 기준, 생산시설 점검과 원산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1조의2(선거관리 핵심물품의</u> <u>국내 생산) ① 다음 각 호의</u> <u>선거관리 핵심물품은 대한민국</u> <u>내에서 생산·제조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1. 투표용지 및 사전투표용지</u> <u>2. 투표함·사전투표함 및 우</u> <u> 편투표함</u> <u>3. 기표대 및 기표용구</u> <u>4. 투표용지 발급기 및 그 전</u> <u> 용용지</u> <u>5. 투표지분류기 및 계수기</u> <u>6. 봉인지 및 특수봉인지</u> <u>7. 그 밖에 투표·개표의 공정</u> <u> 성 및 보안과 직접 관련된</u> <u> 물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</u> <u>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물품</u> <u>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</u> <u> 항 각 호의 물품에 관한 제조</u> <u> ·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</u> <u> 물품의 생산·제조 및 주요 가</u> <u> 공·조립 공정을 대한민국 내</u> <u> 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
③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·제조 및 주요 가공·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 또는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계약상대자는 생산시설의 소재지, 제조공정, 원재료·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·하도급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이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·제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점검할 수 있다.

⑥ 계약상대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, 지급한 계약대금을 환수하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⑦ 국내 생산·제조 및 주요 공정의 기준, 생산시설 점검과

<u>원산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</u>
--